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 내용 비교표[2019.7.1.]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I_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p.16)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1) ~ 4) (생략) 5) 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 가) 재활병동 운영기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전문재활치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를 받는 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3)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70명 이하이어야 한다.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	3. 제공인력 배치 및 운영 1) ~ 4) (현행과 같음) 5) 재활병동 지정기준 및 제공인력 배치 가) 재활병동 운영기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1개 재활병동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1인 이상이거나, 재활의학과 전문의 1인당 환자 수*가 70명 이하이어야 한다. *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입원환자 (3) 전문재활치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7장 제3절)를 받는 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정기준 사항 순서 변경
III_제1절_3 참여 신청방법 (p.23)	3. 참여 신청방법 가. (생략)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당초 지정받은 병동 외에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마), 사)를 재활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라), 바)~사)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병동 추가(변경) 운영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참여 신청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병동 추가(변경) 신청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면서 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중 가)~마), 사)를 재활병동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가)~라), 바)~사)를 제공인력 채용과 병동 환경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병동 추가(변경) 운영 예정일 30일 이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병상확대 신청 편의성 제고 및 기준 명확화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 단, <u>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직전분기와 해당분기 신청 전 월까지</u>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 사) (생략) 2) (생략) 3) 병동을 추가(변경)하는 기관이 지정승인 후 병동을 개시하는 경우 <u>직전분기와 해당분기 신청 전월까지</u>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 <u>직전분기 제공인력 배치기준을</u>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병동을 추가(변경)하는 기관이 지정승인 후 병동을 개시하는 경우 <u>직전분기와 병동 개시 직전 월별 정기신고</u>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III_제1절_4 (p.24)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 지정 및 취소 가. ~ 라. (생략) 마.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승인받은 기관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기관이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사업 승인은 무효로 한다.</u>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병동) 지정 및 취소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정기관은 지정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사업 지정 승인은 무효로 한다.</u>	문구 정비
III_제2절_3 제공인력 적용기준 (p.28-29)	[표 4]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출식 (생략) ※ 정기신고 시, 평가 대상기간 동안 제공인력 배치 산출 환자 수는 <u>평균</u> 일별 환자 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은 <u>평균</u>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표 4] 제공인력 배치기준 산출식 (현행과 같음) ※ 정기신고 시, 평가 대상기간 동안 제공인력 배치 산출 환자 수는 <u>평균</u> 일별 환자 수, 간호(조무)사·재활지원인력 적용인원은 <u>평균 일별</u>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환자수와 제공인력 모두 일평균으로 통일
	[표 6]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식 (생략) ※ 정기신고 시, 평가대상 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 시 환자 수는 <u>평균</u> 일별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u>평균</u>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표 6]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식 (현행과 같음) ※ 정기신고 시, 평가대상 기간 동안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산출 시 환자 수는 <u>평균</u> 일별 환자 수, 병동지원인력 적용인원은 <u>평균 일별</u> 적용인원으로 산출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IV_제1절 신고개요 (p.35)	1. 제공기관은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병동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영 중 병동(병상) 수, 제공인력, <u>환자 수, 근무표의</u>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제공기관은 병동 제공인력 운영현황 및 배치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 병동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운영 중 병동(병상) 수, <u>제공인력의</u>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 하여야 한다.	기 확정된 근무표를 신고하므로 불필요한 문구 삭제
IV_제2절_1 정기신고 (p.36)	1. 정기신고 가. (생략) 나. 작성 기준 1) (생략)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제26호 서식) 가) (생략)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등)에 대해 매일 평가한다. <u>단, 1일 6시간미만 입원한 환자는 평가하지 않는다. (예; 18시 이후 입원 또는 6시 이전 퇴원 등은 평가하지 않음)</u> - (생략) 나) 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중증도·간호필요도 현황을 통해 제공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정기신고 가. (현행과 같음) 나. 작성 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별지 제26호 서식) 가) (현행과 같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 등)에 대해 매일 평가한다. <u><삭제></u> - (현행과 같음) 나) 공단은 기관이 제출한 중증도·간호필요도 현황을 통해 제공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도구 개선에 따른 항목변경 및 중증도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 부여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표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표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 적용기준 해당)				
간호 활동	구분	측정 항목	0점	1점	구분	측정 항목	점수		
		V/S (활력징후) 측정 및 감시	적용 기준에 해당 없음	적용 기준에 해당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0점	1점	2점
		I/O(섭취량/배설량) 측정			호흡간호*	기관 내 흡인간호	●		
		계속적인 감시				인공호흡기 사용		●	
		산소 포화도 측정				비침습적 산소투여	●		
		흡인 간호(기관 내)				정맥 내 투약	●		
		정맥 내 투약			배액관 보유	●			
		기타 투약			위험행동 관리	●			
		배액관 보유			수혈	●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전문치료*	마약제(주사제)			
		전문치료 시행				항암치료제(주사제)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ADL_체위변경	수행정도에 따라 0점 : 도움 없음 1점 : 일부 도움 2점 : 전부 도움			항암치료제(경구제)	●		
		ADL_이동		승압제(주사제)			●		
		ADL_식사섭취		항부정맥제(주사제)			●		
		ADL_배변		면역억제제(주사제, 경구제)	●				
				항혈전제(정맥주사제)		●			
				ADL_체위변경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ADL_침상 밖으로 이동							
		ADL_식사섭취							
	ADL_배변·배뇨								
※ 세부사항은 [별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참조									
※ 세부사항은 [별첨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기준 및 작성방법 참조 * 호흡간호와 전문치료의 최대 합계 점수는 각각 2점임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기본 원칙</u> -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해당 병동 이외 장소에서의 평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 일상생활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평가한다. -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행정도가 낮은 ADL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예;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를 정맥 내로 투여 시 정맥 내 투약에서 중복평가 하지 않음)	<u>다) <삭 제></u>	별첨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 필요도 평가 세부설명으로 이동
IV_제2절_2 변경신고 (p.40)	2. 변경신고 가. 사전 신고 1) ~ 2) (생략) 3)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관련 신고 가)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적용 신고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야간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3), (5)를, 재활병동은 (1), (2), (4), (5)를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u>(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u>	2. 변경신고 가. 사전 신고 1) ~ 2) (현행과 같음) 3)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관련 신고 가)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적용 신고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야간전담 간호사를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1), (2), (4)를, 재활병동은 (1), (3), (4)를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u>(1) <삭 제></u> <u>(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u>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42)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나)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미적용 신고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던 기관이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1)~(3), (5)를, 재활병동은 (1), (2), (4), (5)를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종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취소 신청서(별지 제20-1호 서식)	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나)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 미적용 신고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던 기관이 야간전담 간호사제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1), (2), (4)를, 재활병동은 (1), (3), (4)를 야간전담 간호사 운영 종료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삭 제>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별지 제7호 서식)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취소 신청서(별지 제20-1호 서식)	
(p.42)	다) 병동지원인력 가산 적용 신고 병동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던 기관이 최초로 병동지원인력을 배치하고 가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3), (5)를, 재활병동은 (1), (2), (4), (5)를 병동지원인력 운영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하	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형태 변경 신고 야간전담 간호사 가산을 적용받는 기관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운영형태(야간전담 간호사 월별 10% 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을 변경예정일 15일 이전에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병동지원 인력 가산은 별도의 적용신고가 불필요하여 삭제 야간전담간호사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p.42 ~43)	<u>고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병동지원인력 가산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u> (1)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환자 수 현황(별지 제4호 서식)</u> (2)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u> (3)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 현황(별지 제7호 서식)</u> (4)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 신청현황(재활병동)(별지 제8호 서식)</u> (5)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u>	(1)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u>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제 개정으로 운영형태(비율 또는 병동당 2인) 구분에 따른 변경 신고 신설
	나. 사후 신고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사업 운영 중 병동에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입사, 퇴사, 전입, 전출, 30일 이상의 휴가(분만·출산휴가 포함)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u>”(별지 제5호 서식)을 공단에 즉시 신고한다. － 다만, 제공인력의 근무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 공문(지연신고사유 등 기재)과 제공인력의 근무사항 변경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근무표, 인사명령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나. 사후 신고 1)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사업 운영 중 병동에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입사, 퇴사, 전입, 전출, 30일 이상의 휴가(분만·출산휴가 포함), 병동이동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u>변경사항 발생 즉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별지 제5호 서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u> － 다만, 제공인력의 근무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변경 요청 공문(지연신고사유 등 기재)과 제공인력의 근무사항 변경일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근무표, 인사명령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을 경과하여 신고 된 제공인력은 다음 분기부터 배치평가에 적용한다. － 또한 <u>야간전담간호사 및 병동지원인력의 입사나 퇴사 등 근무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u>	제공인력 변경 지연신고 건에 대한 적용 시점 명시로 적기신고 유도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별지 제 15호 서식)를 추가로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	다. 신고 처리 기간 공단은 제공기관의 변경 신고 접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신고 제출 첨부서류 등을 검토, 심사하고 승인 유무를 제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간 명시 및 결과 통보 의무화
V_제2절_1. 일반원칙 (p.49)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1. 일반원칙 가. ~ 마. (생략) 바. 제공기관이 매분기 마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의 명확한 구분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한 경우는 입원료 중 야간전담 <u>가산</u> 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단,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시에는 제외한다.	제2절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산정 1. 일반원칙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공기관이 매분기 마다 일반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의 명확한 구분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미신고 한 경우는 입원료 중 야간전담 <u>간호사 가산</u> 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단, 전 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 시에는 제외한다.	
V_제2절_2.세부원칙 (p.52)	2. 세부원칙 가. ~ 나. (생략) 다. (생략) -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은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2. 세부원칙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야간전담 간호사제 가산은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야간전담간호사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명확화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수 있다. -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한다. 단, '19.6.30.까지는 야간전담 간호사를 매 일자별 5%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 야간전담 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서면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수 있다. - 야간전담 간호사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수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를 월별 10%이상 또는 병동 당 2명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한다. 단, '19.6.30.까지는 야간전담 간호사를 매 일자별 5% 이상 배치하여 1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 산정할 수 있다. - 야간전담 간호사는 근로계약서 상 야간(20시~익일 8시 사이) 근무 전담으로 명시된 경우를 의미하며, <u>근로계약서에는 야간전담 근무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당 근무시간, 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u>																																																													
V_제3절 (p.56~63)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목록 및 금액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코 드</th><th rowspan="2">분 류</th><th rowspan="2">금액(원)</th></tr> <tr> <th>의·차·과</th><th>한방</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입원관리료 가. ~다. (생략)</td><td></td></tr> <tr> <td></td><td></td><td>라. 3인실 입원관리료</td><td></td></tr> <tr> <td>AO160</td><td>12160</td><td>(1) 상급종합병원</td><td>110,480</td></tr> <tr> <td>AO260</td><td>12260</td><td>(2) 종합병원</td><td>98,860</td></tr> <tr> <td></td><td></td><td><신 설></td><td></td></tr> <tr> <td></td><td></td><td>마. 2인실 입원관리료</td><td></td></tr> </tbody> </table>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차·과	한방			입원관리료 가. ~다. (생략)				라. 3인실 입원관리료		AO160	12160	(1) 상급종합병원	110,480	AO260	12260	(2) 종합병원	98,860			<신 설>				마. 2인실 입원관리료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목록 및 금액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코 드</th><th rowspan="2">분 류</th><th rowspan="2">금액(원)</th></tr> <tr> <th>의·차·과</th><th>한방</th></tr> </thead> <tbody> <tr> <td></td><td></td><td>입원관리료 가. ~다. (현행과 같음)</td><td></td></tr> <tr> <td></td><td></td><td>라. 3인실 입원관리료</td><td></td></tr> <tr> <td>AO160</td><td>12160</td><td>(1) 상급종합병원</td><td>110,480</td></tr> <tr> <td>AO260</td><td>12260</td><td>(2) 종합병원</td><td>98,860</td></tr> <tr> <td>AO360</td><td>12360</td><td>(3) 병원, 한방병원</td><td>87,980</td></tr> <tr> <td></td><td></td><td>마. 2인실 입원관리료</td><td></td></tr> </tbody> </table>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차·과	한방			입원관리료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3인실 입원관리료		AO160	12160	(1) 상급종합병원	110,480	AO260	12260	(2) 종합병원	98,860	AO360	12360	(3) 병원, 한방병원	87,980			마. 2인실 입원관리료		병원급 2,3인실 급여화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차·과	한방																																																														
		입원관리료 가. ~다. (생략)																																																													
		라. 3인실 입원관리료																																																													
AO160	12160	(1) 상급종합병원	110,480																																																												
AO260	12260	(2) 종합병원	98,860																																																												
		<신 설>																																																													
		마. 2인실 입원관리료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차·과	한방																																																														
		입원관리료 가. ~다. (현행과 같음)																																																													
		라. 3인실 입원관리료																																																													
AO160	12160	(1) 상급종합병원	110,480																																																												
AO260	12260	(2) 종합병원	98,860																																																												
AO360	12360	(3) 병원, 한방병원	87,980																																																												
		마. 2인실 입원관리료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코 드		분 류	금액(원)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차과	한방			의·차과	한방			
	AO180	12180	(1) 상급종합병원	147,310	AO180	12180	(1) 상급종합병원	147,310	
	AO280	12280	(2) 종합병원	123,570	AO280	12280	(2) 종합병원	123,570	
			<신 설>		AO380	12380	(3) 병원 한방병원	102,650	
	코 드		분 류	금액(원)	코 드		분 류	금액(원)	
	의·차과	한방			의·차과	한방			
			간호·간병료				간호·간병료		
			가. ~나. (생략)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병원, 한방병원				다. 병원, 한방병원		
			(1) ~ (11) (생략)				(1) ~ (11) (생략)		
			<신 설>						
					AVB21	14B21	(12) 3인실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55,860	
					AVB22	14B22	(13) 3인실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2,600	
					AVB30	14B30	(14)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1,400	
					AVB31	14B31	(15)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48,790	
					AVB32	14B32	(16)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5,540	
					AVB40	14B40	(17)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25	46,350	
					AVB41	14B41	(18)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43,750	
					AVB42	14B42	(19)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40,490	
					AVB70	14B70	(20)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25	42,570	
					AVB71	14B71	(21)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39,960	
					AVB72	14B72	(22)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36,700	
					AVA21	14A21	(23) 2인실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55,860	
					AVA22	14A22	(24) 2인실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40	52,600	
					AVA30	14A30	(25)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25	51,400	
					AVA31	14A31	(26)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48,790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코 의·차과	드 한방	분	류	금액(원)	코 의·차과	드 한방	분	류	금액(원)	
						AVA32	14A32	(27)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45,540	
						AVA40	14A40	(28) 2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25		46,350	
						AVA41	14A41	(29) 2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43,750	
						AVA42	14A42	(30) 2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40,490	
						AVA70	14A70	(31) 2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25		42,570	
						AVA71	14A71	(32) 2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39,960	
						AVA72	14A72	(33) 2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36,700	
AV333	14333		(12)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7,490	AV333	14333	(3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7,490	
AV334	14334		(13)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4,590	AV334	14334	(3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4,590	
AV335	14335		(14)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4,270	AV335	14335	(36)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4,270	
AV336	14336		(15)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4,230	AV336	14336	(3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4,230	
AV337	14337		(16)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1,330	AV337	14337	(38)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1,330	
AV338	14338		(17)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1,010	AV338	14338	(39)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1,010	
AV343	14343		(18)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2,440	AV343	14343	(4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2,440	
AV344	14344		(19)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9,540	AV344	14344	(41)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9,540	
AV345	14345		(20)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9,230	AV345	14345	(42)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9,230	
AV346	14346		(21)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9,190	AV346	14346	(43)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9,190	
AV347	14347		(22)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6,290	AV347	14347	(44)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6,290	
AV348	14348		(23)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5,970	AV348	14348	(45)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5,970	
AV373	14373		(24)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78,660	AV373	14373	(4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78,660	
AV374	14374		(25)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5,760	AV374	14374	(47)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5,760	
AV375	14375		(26)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5,440	AV375	14375	(48)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5,440	
AV376	14376		(27)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5,400	AV376	14376	(4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5,400	
AV377	14377		(28)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2,500	AV377	14377	(50)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2,500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코 의·차과	드 한방	분 류	금액(원)	코 의·차과	드 한방	분 류	금액(원)	
	AV378	14378	(29)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 신 설 >	52,180	AV378	14378	(51)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2,180	
					AVB33	14B33	(52)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7,490	
					AVB34	14B34	(53)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4,590	
					AVB35	14B35	(54)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4,270	
					AVB36	14B36	(55)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4,230	
					AVB37	14B37	(56)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1,330	
					AVB38	14B38	(57) 3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61,010	
					AVB43	14B43	(58)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2,440	
					AVB44	14B44	(59)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9,540	
					AVB45	14B45	(60)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9,230	
					AVB46	14B46	(61)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9,190	
					AVB47	14B47	(62)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6,290	
					AVB48	14B48	(63) 3인실 간호사 1:14,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5,970	
					AVB73	14B73	(64)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78,660	
					AVB74	14B74	(65)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65,760	
					AVB75	14B75	(66)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55,440	
					AVB76	14B76	(67)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75,400	
					AVB77	14B77	(68)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62,500	
					AVB78	14B78	(69) 3인실 간호사 1:16,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25	52,180	
					AVA33	14A33	(70)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0	87,490	
					AVA34	14A34	(71)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15	74,590	
					AVA35	14A35	(72)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30 재활지원 1:25	64,270	
					AVA36	14A36	(73)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0	84,230	
					AVA37	14A37	(74) 2인실 간호사 1:12, 간호조무사 1:40 재활지원 1:15	71,330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코 드 의·차과한방		분	류	금액(원)	코 드 의·차과한방		분	류	금액(원)	
V_제4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센티브 (p.64)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 ~ 2. (생략) 3. <u>가감지급금액 범위</u> <u>평가결과의 적용 시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는</u>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연도에 대한 <u>지급결정</u> 공단부담금의 100분 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되, 가산 또는 감액률은 성과평가 자문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센티브 1. ~ 2. (현행과 같음) 3. <u>인센티브 지급금액 범위</u> <u>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에서 지급하며, 지급</u> <u>금액의 범위는</u> 평가대상 기관의 평가연도에 대한 <u>간호</u> <u>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u> 지급결정 공단부담금의 100 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금액은 성과평가 자문 단 심의를 거쳐 정한다.				성과평가 인센 티브 재원 명시 를 통한 안정적 지급 근거 확보		
VII_제3절_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실태점검				제3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실태점검				자율점검표 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5 병동운영 자율점검 (p.83)	1. ~ 4. (생략) 5. <u>제공기관 자가 점검표 작성</u>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적정운영을 위해 자가 점검표를 활용하여 반기별로 자체 점검하도록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u>병동 운영 자율 점검</u> 가. 제공기관은 병동 운영 수준 상향 표준화를 위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표”(별지 제30호 서식)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또한, 제공기관은 공단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근거 마련 및 자율 점검 인식 제고로 자율점검 활성화 유도
VII_제5절_3 (p.88~89)	3. 지원내용 및 절차 가. (생략) 나. (생략) 1) 사업개시 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 나) (생략) 다) 승인된 의료기관은 사업을 개시하고 구입 품목에 대한 대금을 완납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구입품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서약서는 원본을, 지원품목 현황표, 설치사진,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지원신청 시)은 사본을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한다.	3. 지원내용 및 절차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 사업개시 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승인된 의료기관은 사업을 개시하고 구입 품목에 대한 대금을 완납 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에 구입품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u> 는 원본을,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u> , 설치사진,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u> , 침대 보유대장(추가품	관련 별지 서식명 기재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목 지원신청 시)은 사본을 지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한다.																																									
	라) 공단은 청구한 의료기관의 사업 개시 여부, 지급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table><tr><th>구분</th><th>지원 신청</th><th>검토·승인</th><th>지원금 청구</th><th>확인·지급</th></tr><tr><td>주체</td><td>의료기관</td><td>공단</td><td>의료기관</td><td>공단</td></tr><tr><td>시점</td><td>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td><td>사업 개시 전</td><td>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td><td>서류 접수 15일 이내 지급 예정</td></tr><tr><td>내용</td><td>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td><td>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td><td>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td><td>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td></tr></table> 2) 사업개시 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 <u>서약서는 원본을</u>, 지원 신청한 품목의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u>지원품목 현황표</u>, 침	구분	지원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지급	주체	의료기관	공단	의료기관	공단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서류 접수 15일 이내 지급 예정	내용	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라) (현행과 같음) [사업개시 후 지원 절차] <table><tr><th>구분</th><th>지원 신청</th><th>검토·승인</th><th>지원금 청구</th><th>확인·지급</th></tr><tr><td>주체</td><td>의료기관</td><td>공단</td><td>의료기관</td><td>공단</td></tr><tr><td>시점</td><td>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td><td>사업 개시 전</td><td>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td><td><u>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u></td></tr><tr><td>내용</td><td>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td><td>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td><td>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td><td>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td></tr></table> 2) 사업개시 전 시설개선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예비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2호 서식),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 서약서(별지 제24호 서</u>	구분	지원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지급	주체	의료기관	공단	의료기관	공단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u>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u>	내용	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시설개선비 지원금 지급시점 명확화 관련 별지 서식명 기재
구분	지원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지급																																							
주체	의료기관	공단	의료기관	공단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서류 접수 15일 이내 지급 예정																																							
내용	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구분	지원 신청	검토·승인	지원금 청구	확인·지급																																							
주체	의료기관	공단	의료기관	공단																																							
시점	신규 지정, 병상 확대 승인 이후	사업 개시 전	사업 개시, 구입 품목 대금 완납 후	<u>지급 승인 후 15일 이내 지급</u>																																							
내용	시설개선 예비신청서, 견적서 제출	신청서 등 검토 후 승인	청구서, 증빙자료 등 자료 제출	사업개시 여부, 증빙자료 등 확인 후 지급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지원 신청 시)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다. 나) (생략) 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은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는 원본을, 설치사진, <u>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u>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다. 라) 공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원 신청·청구</th><th>검토·지급</th><th>사후조치</th></tr> </thead> <tbody> <tr> <td>주체</td><td>요양기관</td><td>공단</td><td>요양기관·공단</td></tr> <tr> <td>시점</td><td>신규 및 병상 확대 지정 전·후</td><td><u>사업개시 15일 이전</u></td><td>- (요양기관) 사업개시 후 7일 이내 - (공단) 사업 미 개시 기관 보조금 환수</td></tr> <tr> <td>내용</td><td>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 등 1차 자료제출</td><td>물품구매계획 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td><td>세금계산서 등 2차 자료제출</td></tr> </tbody> </table>	구분	지원 신청·청구	검토·지급	사후조치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공단	시점	신규 및 병상 확대 지정 전·후	<u>사업개시 15일 이전</u>	- (요양기관) 사업개시 후 7일 이내 - (공단) 사업 미 개시 기관 보조금 환수	내용	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 등 1차 자료제출	물품구매계획 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세금계산서 등 2차 자료제출	<u>식</u>)는 원본을, 지원 신청한 품목의 견적서, 물품구매계약서,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품목 청구서(별지 제23호 서식)</u>, 침대 보유대장(추가품목 지원 신청 시)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다. 나) (현행과 같음) 다) 지원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은 사업 개시 후 7일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등)는 원본을, 설치사진,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u>은 사본을 공단에 제출한다. 라) 공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하여 심사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 지원 절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원 신청·청구</th><th>검토·지급</th><th>사후조치</th></tr> </thead> <tbody> <tr> <td>주체</td><td>요양기관</td><td>공단</td><td>요양기관·공단</td></tr> <tr> <td>시점</td><td>신규 및 병상 확대 지정 전·후</td><td><u>시설개선비 지급 승인 후 30일 이내</u></td><td>- (요양기관) 사업개 시 후 7일 이내 - (공단) 사업 미 개 시 기관 보조금 환수</td></tr> <tr> <td>내용</td><td>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 등 1차 자료제출</td><td>물품구매계획 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td><td>세금계산서 등 2차 자료제출</td></tr> </tbody> </table>	구분	지원 신청·청구	검토·지급	사후조치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공단	시점	신규 및 병상 확대 지정 전·후	<u>시설개선비 지급 승인 후 30일 이내</u>	- (요양기관) 사업개 시 후 7일 이내 - (공단) 사업 미 개 시 기관 보조금 환수	내용	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 등 1차 자료제출	물품구매계획 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세금계산서 등 2차 자료제출	시설개선비 지원금 지급시점 명확화
구분	지원 신청·청구	검토·지급	사후조치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공단																																
시점	신규 및 병상 확대 지정 전·후	<u>사업개시 15일 이전</u>	- (요양기관) 사업개시 후 7일 이내 - (공단) 사업 미 개시 기관 보조금 환수																																
내용	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 등 1차 자료제출	물품구매계획 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세금계산서 등 2차 자료제출																																
구분	지원 신청·청구	검토·지급	사후조치																																
주체	요양기관	공단	요양기관·공단																																
시점	신규 및 병상 확대 지정 전·후	<u>시설개선비 지급 승인 후 30일 이내</u>	- (요양기관) 사업개 시 후 7일 이내 - (공단) 사업 미 개 시 기관 보조금 환수																																
내용	시설개선비 지원신청 및 물품구매계획 등 1차 자료제출	물품구매계획 서 및 청구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세금계산서 등 2차 자료제출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VII_제5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p.91)	5. 준수사항 가. ~ 다. (생략) 라.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u>장비 관리대장</u> 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5. 준수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설개선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 <u>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 지원 장비 관리대장</u> ”(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한다.	
별첨	< 변경 >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 25~30쪽 붙임 참조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도구 개정에 따른 설명 변경
	< 신설 >	(별첨6) 병동 운영 자율점검 세부설명 ※ 31~35쪽 붙임 참조	자율점검표 항목별 세부 기준 안내
별지 서식	< 변경 > (별지 제5호 서식) < 변경 > (별지 제15호 서식) < 변경 > (별지 제20호 서식) < 변경 > (별지 제26호 서식) < 신설 >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별지 제15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별지 제20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별지 제26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별지 제30호 서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표	제도개선에 따른 서식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_Q&A 2. 간호인력 배치 및 인력 적용 기준	9. 재활병동 입원 환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 재활병동 입원환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의 환자로 50% 이상은 1년 이내이어야 함. - (생략) - (생략)	9. 재활병동 입원 환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 <u>재활병동은 주로 뇌병변 질환 등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ADL)을 못해 관찰과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 필요도가 매우 높고 재활치료센터로의 이송 등 보조인력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환자로 구성된 병동(병원)을 말함.</u> - 재활병동 입원환자는 주당 평균 4일 이상 전문재활치료를 받고 발병 또는 수술 후 2년 이내의 환자로 50% 이상은 1년 이내이어야 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재활병동의 정의 삽입
부록 Q&A_ 3. 신고관련	6. 야간전담 간호사 주당 근무시간 계산방법? >> 야간전담 간호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주당 근무시간으로 하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월 평균 주당근로시간을 산출함.	< 삭 제 >	
	<u>7. ~ 13</u> < 신 설 >	<u>6. ~ 12. (번호 변경)</u> <u>13. (평가대상) 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 전동 (transfer)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u> >> <u>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전동(예; C001 → C002)한 당일의 평가는, 마지막 병동(C002)에서 평가함. 단, 이전 병동에서 시행한 간호활동 및 일상생활수행능력 도움을 포함하여 평가함.</u> - <u>입퇴원 여부 : 2.(입원, 전입)로 기재</u>	중증도·간호 필요도 평가 도구 개정에 따라 추가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 신 설 >	14. (평가대상) 환자가 외박을 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 외박일(0시부터 24시까지 부재 시) – 입퇴원 여부 : 6(외박)으로 기재 – 간호활동, ADL, 낙상발생장소 : ‘0’으로 기재 – 욕창단계: 전날과 동일하게 기재 • 외박 시작일·종료일 : 0시부터 퇴실 시각까지 또는 입 실 시각부터 24시까지 평가 – 입퇴원여부: 1(재원)로 기재	중증도 간호필 요도 변경에 따 라 추가
	< 신 설 >	15. (생년월일) 환자의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작성하는가? >> 불가피한 사유로 생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출생연 도(YYYY)는 가능한 정확하게 입력하고, 월일(MMDD) 은 ‘9999’로 입력함. – 예 : 출생연도가 2001년일 때, ‘20019999’로 기재	
	14.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의 경우 수술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16. (당일수술여부) 수술을 하기 위하여 입원한 환자의 경우 수술여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15. 욕창이 두 군데 발생할 경우 욕창 단계는 어떻게 평가 하는가?	17. (욕창) 욕창이 두 군데 발생할 경우 욕창 단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신 설 >	18. (욕창)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욕창도 단계를 기재해 야 하는가? >> 입원 전부터 가지고 있던 욕창도 평가해야하며, 입원일 부터 욕창 단계를 사정 후 기입하면 됨.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16. 환자가 통합병동 내가 아닌 이외 장소(로비 등)에서 낙상하였다면 평가대상인가?</u> >> 장소와 상관없이 입원기간 중 일어난 낙상은 모두 평가대상임. － 다만, 낙상평가지 검사나 치료가 이루어진 낙상만 기재하면 되며, 검사 결과 상 골절 등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검사가 수행된 경우에는 해당 됨.	<u>19. (낙상발생장소) 환자가 통합병동 밖(로비 등)에서 낙상하였다면 평가대상인가?</u> >> 장소와 상관없이 입원기간 중 일어난 낙상은 모두 평가대상임. < 삭 제 >	중증도 간호필요도 변경에 따라 추가
	<u>17. 12시간 동안 N/S 500ml+tanamin17.5mg을 1일 지회 투여할 경우와 24시간동안 N/S 1L+tanamin 35mg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u>	<u>20. (정맥 내 투약) 12시간 동안 N/S 500ml+tanamin 17.5mg을 1일 지회 투여할 경우와 24시간동안 N/S 1L+tanamin 35mg을 1일 1회 투여할 경우, <u>투약</u>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u>	
	<u>18. 영양제를 포함해 수액 자체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전해질(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등)을 투약하는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u> >> 단순 전해질 투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u>혈액검사 결과에 따라</u>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함 (검사 전후 또는 수술 전후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전해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u>21. (정맥 내 투약) 영양제를 포함해 수액 자체를 투입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u>고농도</u> 전해질(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등)을 투약하는 경우,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u> >> 단순 전해질 투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u>전해질 불균형 교정 등</u> 치료적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함 (검사 전후 또는 수술 전후 일상적으로 투약하는 전해질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19. <u>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내투약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같이 병용투여하는 약제는 해당되는가?</u> <u>>> 항암제를 제외한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병용 투여하는 약제는약품별 투여횟수로 산정함</u>	22. (정맥 내 투약)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내 투약에서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예를 들어 부작용 방지를 위해 <u>전문치료약제와 병용투여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약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u> <u>>> 전문치료약제(마약제, 항암제 등)를 제외한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병용 투여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약 항목에서 약품별 투여횟수로 산정할 수 있음</u>	중증도 간호필요도 변경에 따라 추가
	20.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해당하는가? <u>>> 타병원에서 마약을 가져왔더라도 해당 병동에서 투약시 계획, 실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을 하면 해당함.</u>	<삭 제>	
	< 신 설 >	23. (수혈) 알부민 투여도 수혈에 포함되는가? <u>>> 알부민을 투여하는 것은 수혈로 평가할 수 없음</u>	
	< 신 설 >	24. (전문치료) 처방일과 실제 투여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u>>> 실제 투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하며, 투약기록지 등을 통해 투약여부 확인이 가능해야 함.</u>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 신 설 >	25. (마약제) PCA를 통해 마약제를 투여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가? >> PCA를 통해 약물 주입을 하는 기간 동안은 마약제(주사제) ‘해당함’으로 평가함. – 예를 들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PCA 적용 시, 3일 동안 마약제(주사약) ‘해당함’으로 평가함.	
	< 신 설 >	26. (식사섭취) 물만 마시는 금식환자에게 물을 주는 것도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 물을 마시는 행위는 식사 섭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신 설 >	27. (침상 밖으로 이동)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나와 휠체어에 앉을 수 있으나, 직원이 휠체어를 밀어준 경우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 환자가 스스로 침상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밀어주는 행위는 도움으로 평가할 수 없음	
	< 신 설 >	28. (배변·배뇨) 배변을 위해 관장을 시행한 경우도 도움으로 평가 가능한가? >> 관장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수행 도움에 포함되지 않음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부록_Q&A - 4. 수가 및 청구 관련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상급병실 차액 산정이 가능한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u>상급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본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 건강보험으로 산정하고,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환자가 부담함.</u> (예시) 종합병원 표준배치(간호사 당 환자 수 1:10, 간호조무사당 환자 수 1:30)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상급병실 차액은?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는 109,690원 - 기본 입원관리료 (48,460원) + 간호간병료 (61,230원) ② 1인실 입원료(비급여로 병원마다 가격이 다름)200,000원으로 가정 ③ 상급병실 차액은 90,310원 - ② 1인실 입원료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르면 “동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를 부담하며,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와 종합병원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	1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도 상급병실 차액 산정이 가능한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에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 <u>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 비용 전액(입원관리료, 간호간병료)을 비급여대상으로 정함에 따라, '19.7.1부터 산정이 불가함.</u> ※ 단, 병원 1인실에 입원하는 6세미만 환자 및 산모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20.7월 시행)하여 기본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청구하고 상급병실 차액(비급여)을 환자가 부담함 25.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되는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에 따라 동법 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입원일수가 16일 이상 30일까지는 입원료의 25%, 입원 31일 이상부터는 입원료의 30%를 부담한다. <u>단.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u>	해당 법령·고시 변경으로 답변 내용 변경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u>우, 질병군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언급되어 있음.</u> <u>－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입원실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u> <u>－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30, 종합병원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각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환자가 부담함.</u> ○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 <u>보건복지부 고시 2017-2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 따름.</u>	<u>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30, 종합병원·병원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각각 100분의 40·100분의 30을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환자가 부담하나, ’20.1월부터는 입원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u> <u><장기 입원에 따른 종별 인실별 본인부담률></u>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인실</th><th colspan="2">3인실</th><th colspan="2">4인실</th><th colspan="2">5인실이상</th></tr><tr><th>16일~30일</th><th>31일 이상</th><th>16일~30일</th><th>31일 이상</th><th>16일~30일</th><th>31일 이상</th><th>16일~30일</th><th>31일 이상</th></tr><tr><td>상급종합</td><td>55%</td><td>60%</td><td>45%</td><td>50%</td><td>35%</td><td>40%</td><td>25%</td><td>30%</td></tr><tr><td>종합병원 ,병원</td><td>45%</td><td>50%</td><td>35%</td><td>40%</td><td>25%</td><td>30%</td><td>25%</td><td>30%</td></tr></table> <u>－ 다만, 질병군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일반입원실에 해당되므로 상기의 본인부담률을 동일하게 적용함.</u> ● 그 외, 일반사항과 적용범위, 예외기준, 청구방법 관련은<u>“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름.</u>	구분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상급종합	55%	60%	45%	50%	35%	40%	25%	30%	종합병원 ,병원	45%	50%	35%	40%	25%	30%	25%	30%	
구분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16일~30일	31일 이상																														
상급종합	55%	60%	45%	50%	35%	40%	25%	30%																														
종합병원 ,병원	45%	50%	35%	40%	25%	30%	25%	30%																														

별첨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 · 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

< 기본 원칙 >

- 평가는 24시간(0~24시까지)의 기록과 관찰을 근거로 하고 추측하지 않는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서 실시한 간호활동과 일상생활수행능력만 평가한다.
(응급실, 수술실, 투석실, 검사실 등 통합병동 외에서 일어난 행위는 포함하지 않음)
- 각 항목 간 중복 평가하지 않는다.
(예; 전문치료 항목에 해당하는 약제는 정맥 내 투여 항목에서 투약 횟수 산정 제외)
- 전문치료 약제는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평가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의 평가는 보조기(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는 경우, 보조기를 적용한 상태에서 평가한다.
- 평가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수행정도가 낮은 ADL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일부 도움', '전부 도움'으로 평가 시 환자의 수행정도와 도움 제공에 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적용기준 해당)

구분	측정 항목		점수		
			0점	1점	2점
간호 활동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적용 기준 해당 없음	●	
	호흡간호*	기관 내 흡인간호		●	
		인공호흡기 사용			●
		비침습적 산소투여		●	
		정맥 내 투약		●	
	배액관 보유			●	
	위험행동 관리			●	
	수혈			●	
	전문치료 *	마약제(주사제)		●	
		항암치료제(주사제)			●
		항암치료제(경구제)		●	
		승압제(주사제)			●
		항부정맥제(주사제)			●
		면역억제제(주사제,경구제)		●	
항혈전제(정맥주사제)			●		
일상 생활 수행 능력	ADL_체위변경		도움 없음	일부 도움	전부 도움
	ADL_침상 밖으로 이동				
	ADL_식사섭취				
	ADL_배변·배뇨				

* 호흡간호와 전문치료의 최대 점수는 각각 2점임

1. 간호활동 항목별 적용기준 및 유의사항

연번	측정 항목	적용기준	유의사항
1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환자의 심기능, 호흡기능에 장애가 있어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간호사 등에 의한 심전도 평가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이란 심전도 침상 감시(Bedside EKG Monitoring)와 같이 환자의 심전도를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 일회성 심전도 검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기관 내 흡인간호	T-cannula, E-tube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를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비구강내 흡인(oral nasal suction)은 포함하지 않는다.
	호흡간호 인공호흡기 사용	① 기관 내 삽관(T-cannula, E-tube 등)을 통한 인공호흡기 사용 ② 비침습적 양압환기(NPPV) ③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놀라 요법(optiflow 등) ①~③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침습적 산소투여	비침습적 산소투여를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산소 투여 방식(비강 캐놀라, 단순 마스크 등)과 투여 용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비침습적 양압환기 및 가온 가습 고유량 비강캐놀라 요법은 제외한다.
3	정맥 내 투약	전문치료 약제를 제외한 정맥 내를 통해 투여하는약품별 투여 횟수의 합이 6회 이상/1일인 경우에 해당한다. (수액, 영양제 제외)	- A약제를 하루 3번 투여 시 3회로 산정한다. - 1회 방문 시 서로 다른 2종의 약물을 투여할 경우 2회로 산정한다. - 약제를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는 경우, 수액을 제외한 약제만 투여 횟수로 산정한다. • N/S + A약제 혼합: 1회 • N/S + A약제 + B약제 혼합: 2회 - 영양제(비타민 포함)와 수액은 투여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4	배액관 보유	① 2개 이상의 배액관 보유 ② 1개 이상의 흉관, 뇌실배액관, 지속적 요추지주막하배액관 보유 ①~②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배액관 관리에 관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배액관이란 상처부위, 수술 및 시술 부위 등의 배액·감압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이다. • 장루, 배뇨를 목적으로 하는 foley-catheter, 경관영양을 시행하는 L-tube, 일시적으로 삽입·제거하는 관(nelaton catheter, rectal tube 등) 등은 배액관에서 제외한다. - 배액관을 2개 이상 관리 중 제거한 당일은 적용기준에 해당한다.

연 번	측정 항목	적용기준	유의사항
5	위험행동 관리	치매, 섬망, 간성혼수, 환각(hallucination) 등으로 위험행동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를 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위험행동: 배액관 및 주입라인의 제거, 자해, 폭행 등 신체적(물리적) 위해가 발생하는 행동 - 환자 상태, 위험행동 양상 및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관리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6	수혈	수혈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혈액의 종류(전혈, 농축적혈구, 신선동결혈장 등), 용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 수술실, 투석실 등 통합병동 외에서 실시한 수혈은 포함하지 않는다. · 단, 통합병동 외에서 실시한 수혈이 종료되지 않아, 통합병동 내에서 수혈의 일부 과정을 시행하고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해당한다.
7	전문 치료	마약제 (주사제)	통증이 있는 환자의 중추 신경계의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마약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마약에 해당하는 약물이다. ·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 외 약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 주사제 투여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PCA로 투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항암치료제 (주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치료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 기전에 따라 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호르몬성항암제, 면역조절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주사제 투여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 가능하다. · 약물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항암제 이외의 약제만 투여한 날은 해당하지 않는다.
		항암치료제 (경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증식, 전이, 재발의 억제, 축소, 제거를 목적으로 항암치료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암제는 종양세포의 증식과 생존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약제로서, 작용 기전에 따라 알킬화제, 대사길항제, 호르몬성항암제, 면역조절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항암제를 투여한 당일만 평가 가능하다. · 약물 부작용 감소 등을 위해 항암제 이외의 약제만 투여한 날은 해당하지 않는다.
		승압제 (주사제)	쇼크, 저혈압, 순환 허탈 환자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승압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승압제는 심박출량의 증가, 말초혈관 수축 등에 의해 승압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로,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다.

편	측정 항목	적용기준	유의사항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신부전 환자의 신장 혈류 증가를 위해 도파민을 Renal Dose로 사용하는 등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 이외의 사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항부정맥제 (주사제)	부정맥이 있는 환자에게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부정맥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부정맥제는 나트륨통로차단제, 베타 차단제, 칼륨통로차단제, 칼슘통로차단제 등으로 분류되고,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주사제 투여 방법은 제한하지 않는다. - 신경 안정, 혈압 하강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적용기준에 명시된 부정맥 발생 억제를 위한 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면역억제제 (주사제, 경구제)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치료 또는 장기이식 환자의 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주사제,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면역억제제는 체액성 또는 세포성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능력을 저하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제로, 약제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는다. - 수혈 시 거부반응 방지, 부작용의 경감 등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 외 투약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항혈전제 (정맥내투여)	관상동맥 질환, 뇌경색, 심부정맥혈전증, 폐동맥혈전색전증 등 혈전·색전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급성 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항혈전제를 정맥내로 투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항혈전제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 등이 있으며, 약제의 종류 및 양을 제한하지 않는다. - 정맥주사로의 개방성 유지를 위해 항혈전제를 투여하는 경우 등 적용기준에 명시된 목적 외 투여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약물 투여 방법은 정맥 내 주사만 포함하며, 경구 및 피하 투여 등은 제외한다.

2. 일상생활 수행능력 항목별 수행정도에 따른 적용기준

연번	측정 항목	수행정도		정의 및 내용
1	체위변경	스스로 양와위(반듯이 누워 있는 자세)에서 측와위(옆으로 누운 자세)로 변경 가능한 지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 도움 없이 스스로 양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이 가능하다. - 한 쪽으로만 변경이 가능해도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침대 난간, 끈, 바, 사이드 레일 등을 사용하여 도움 없이 변경 가능하면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침대 난간, 끈, 바, 사이드 레일을 설치·조정하기 위한 도움은 포함하지 않음
		1점	일부도움	• 스스로 양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이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간호직원 등이 도움을 주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2점	전부도움	• 양와위에서 측와위로 체위변경을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모든 과정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2	침상 밖으로 이동	침상 내에서 침상 밖(휠체어, 이동형 침대, 이동기구 또는 지면 등)으로 스스로 이동 가능한 지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 도움 없이 스스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무언가를 잡거나 보조기구(지팡이 등)를 이용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와상, 절대안정 등의 사유로 침상 밖으로 이동이 없는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한다. ※ 이동하기 위해 보조기구를 준비, 사이드 레일을 내리는 등의 도움은 포함하지 않음
		1점	일부도움	• 스스로 침상 밖으로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이 팔 또는 몸의 일부를 지지하는 도움이나 이동 시마다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 환자의 허약, 장애, 약물, 낙상 과거력, 치료기구 등으로 인하여 침상 밖으로 이동할 때마다 관찰이 필요한 경우만 포함
		2점	전부도움	• 혼자서는 침상 밖으로 이동을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안고, 옮겨주는(이지슬라이더 등의 기구 혹은 장비 이용 포함) 등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연 번	측정 항목	수행정도		정의 및 내용
3	식사섭취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때 환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식사는 경구 영양, 경관 영양을 포함하고, 중심정맥영양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방에서 조리, 배식, 뒷정리, 식사 후 청소, 식사하기 위해 앉히는 것, 앞치마 걸기 등은 도움에 포함하지 않는다.		
		0점	도움없음	• 도움·관찰 없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다. - 수저 외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 - 금식, 중심정맥영양(TPN) 등의 사유로 식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도움 없음으로 평가
		1점	일부도움	① 간단한 식사도구(숟가락, 포크 등)는 스스로 다룰 수 있으나 작게 자르기, 껍질 벗기기, 생선 바르기 등을 스스로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② 흡인(aspiration) 과거력, 인지장애, 연하곤란(dysphagia) 등으로 인하여 식사하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 곁에서 관찰·감독이 있어야 한다. ①~②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점	전부도움	• 혼자서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모든 과정에서 전적인 도움(스푼 피딩 등)을 받아야 한다.
4	배변 배뇨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화장실까지 이동 시 제공하는 도움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장루유지환자 중 스스로 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하는 환자는 “도움 없음”에, 간호직원 등이 장루주머니를 비우고 관리해주는 환자는 “전부 도움”으로 평가한다.		
		0점	도움없음	• 도움 없이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스스로 할 수 있다.
		1점	일부도움	① 도움 없이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간호직원 등의 일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정서 장애, 인지 장애, 혈압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배변·배뇨를 하는 동안 반드시 누군가 곁에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③ Foley-catheter를 적용 중이다. ①~③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도움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2점	전부도움	• 스스로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 모두를 전혀 할 수 없어 간호직원 등에 의해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별첨6

병동 운영 자율 점검 세부설명

구분	영역	판단기준	지표 유형	결과	척도	배점
1. 제공기관 병동운영 사항 준수 (7개 항목)	① 제공인력 지정배치 기준 준수 운영	- 공단에 신고한 인력 현황을 기준으로 월별 제공인력 배치평가 결과, 제공인력 지정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 점검 월을 기준으로 준수 기간 확인 ※ 통합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서비스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월 배치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기준을 월 단위로 설정	필수	최근 12개월 이상 연속 준수	우수	5
				최근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준수	보통	3
				6개월 미만 준수	미흡	1
	② 팀 간호체계 제공	- 점검 당일 제공인력 면담으로 팀 간호 운영 여부 확인 - 제공인력 면담 및 근무표로 확인 - 신규간호사 교육 기간으로 일부 기능 간호 병행하는 경우는 우수로 판단하나, 교육 일정 종료 후에는 팀 간호 운영하도록 안내 1개 이상 통합병동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병동별 팀 간호와 기능간호 병행운영이 확인된 경우는 보통으로 판단	필수	팀 간호 운영	우수	5
				팀 간호와 기능간호 병행 운영	보통	3
				기능 간호 운영	미흡	1
	③ 병동운영 지침마련 및 적용	- 공단 표준운영매뉴얼을 적용한 병동운영지침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 병동운영지침에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현장 확인 ㉠ 병동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작성 ㉡ 제공인력 교육 및 업무 규정 ㉢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 ㉣ 병동의 입원환자 구성 ㉤ 입원환자 관리기준 ㉥ 감염관리 규정 ㉦ 보호자 및 병문안객 관리 방안 - 안전사고 보고체계·감염관리 등 일부항목이 병원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통합병동운영지침에 병원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필수	7개 항목 전체 포함되어 있음	우수	5
				5개 이하 항목 포함되어 있음	보통	3
				3개 미만 항목 포함되어 있음	미흡	1
	④ 인력배치 수준 게시	점검 당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게시 여부 확인	필수	제공기관 통합서비스 병동 전체에 게시한 경우	우수	5
				제공기관 통합서비스 일부 병동에만 게시한 경우	보통	3
				제공기관 통합서비스 병동 내 미게시한 경우	미흡	1
	⑤ 정기신고 준수	- 점검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정기신고 현황 확인 - 매월 직전 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공단에 적기신고 하는지 여부 확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필수	모든 항목 정기신고 기간 내 신고	우수	5
				일부 항목 정기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	보통	3

구분	영역	판단기준	지표 유형	결과	척도	배점
2. 환자 안전 보장 (5개 항목)	⑥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준수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보호자 상주 현황 ⑦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중증도·간호 필요도 일일 평가표 ⑧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재활병동에만 적용) • 간호관리료 차등제신고(심사평가원) 미신고 한 경우는 보통으로 판단함		전체 항목 정기신고 기간 이후에 신고	미흡	1
		• 점검 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신고 현황 확인 • 사업 운영 중 병동에 근무하는 제공인력의 근무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토·공휴일 포함)공단에 신고 여부 확인 - 사업지침에 명시된 '즉시'의 기준을 7일 이내로 해석하며, 발생일은 변경 사유 발생일을 의미함 - 근무사항 변경내용 ① 병동 전입 ② 병동 전출 ③ 30일 이상의 휴가(분만·출산 휴가 포함) ④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 전체 항목이 변경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한 경우 우수로 인정 - 변경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우수 • 30일 미만의 휴가로 미신고 상태에서 휴가 연장으로 30일 이상의 휴가가 될 경우, 휴가원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징구하고, 서류에 적힌 사유 발생 일부터 기산	필수	전체 변경항목을 변경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우수	5
				변경항목을 변경 발생일로부터 8일 이상 14일 이내 신고	보통	3
				변경항목을 변경 발생일로부터 15일 이상 지연 신고	미흡	1
	⑦ 제공인력 채용기준지침	• 통합병동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하여 특별수당의 형식으로 3개월 이상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우수로 판단 ※ 연 단위로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는 우수로 인정 • 점검 당월부터 지급하는 경우는 보통으로 판단	필수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특별수당 지급	우수	5
				비정기적 특별수당 으로 지급	보통	3
				수당 지급 없음	미흡	1
	⑧ 입원생활 안내	• 통합병동 입원 또는 동의서 작성 시 아래 항목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 ① 본인부담금 안내 ② 보호자 상주 제한 ③ 면회 시간 ④ 호출벨 사용 방법 ⑤ 입원생활 전반 안내(설명) • 면담 환자는 통합병동 전체 환자 중 5명 이상 임의로 선정 -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로 선정	필수	5개 항목에 대해 5명 전체가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	우수	5
				5개 항목에 대해 3명 이상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	보통	3
				5개 항목 중 일부 또는 3명 미만이 들었다고 응답	미흡	1
	⑨ 환자안전 예방활동	• 점검 월 기준 직전 3개월 • 통합병동에서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일지 또는 QI 활동 보고서 ①낙상 ②욕창 ③감염 ④정확한 투약	필수	4개 항목 전체 예방 활동 수행	우수	5
				3개 항목 예방 활동 수행	보통	3

구분	영역	판단기준	지표 유형	결 과	척도	배점
3. 안전한 시설 및 환경관리 (4개 항목)	⑩ 안전사고 보고체계준수	• 교육일지, QI 활동일지 등에 환자 안전사고 예방 항목 4개가 모두 포함된 경우 우수로 인정 - 분산되어 기록된 경우도 인정	필수	2개 항목 이하 예방 활동 수행	미흡	1
		• 기관이 제출한 환자 안전관리 지침과 점검 월 기준 3개월 동안의 발생 현황 확인. 발생한 경우 보고체계에 의한 관리 여부가 이뤄지는지 확인 • 안전사고 발생 후 병원의 보고 체계에 의한 운영·관리 여부 확인 - 보고 체계는 있으나 발생 건수 없는 경우 우수로 판단 ※ 발생 건수 중심의 점검이 아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안전 관리 지침에 따른 운영 여부를 점검		보고체계 마련 및 준수	우수	5
				보고체계는 있으나 미준수	보통	3
	⑪ 보호자 상주 관리	• 공단에 신고한 보호자 상주 현황과 기관에서 제출(보관)한 보호자 상주 확인서 건수 및 작성 내용 일치 여부 점검 • 점검 월 기준 직전 3개월 • 보호자 상주 확인서 작성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도 우수로 인정하나,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 • 보호자 간이침대 또는 의자 상시 비치는 미흡으로 판단 - 상주확인서 작성한 보호자 제외	필수	상주확인서 작성, 기록물 관리, 공단 신고 건수 일치	우수	5
				일부 확인서 작성 누락 또는 공단 신고 건수 불일치	보통	3
				상주확인서 미작성 또는 공단 신고 건수 불일치	미흡	1
	⑫ 병문안객 관리	• 점검 당일 기관이 제출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기준과 병동별 병문안객 기록지 작성·비치 여부 점검 •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 적용 확인 [평일 (18:00~20:00), 주말·공휴일(10:00~12:00, 18:00~20:00)] • 병문안객 명부 작성 및 관리 확인 - 병문안객 기록지 관리: 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 비치, 퇴원 후 30일간 보관 후 파기 - 명부 작성은 잘하고 있으나, 복지부 권고 시간 외에 방문객이 있을 경우, 보통으로 판단함 - 진료 상담을 위해 의료진이 보호자 방문을 요청한 경우 인정 • 심사평가원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로 병문안 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 입원실 병상에 환자별 병문안객 기록지 비치하고, 환자 퇴원 후 30일간 보관 후 파기하는 경우 우수로 인정	필수	복지부 권고안 적용, 명부 작성과 관리 적정	우수	5
				복지부 권고안 적용 또는 명부 작성과 관리 적정	보통	3
				복지부 권고안 미적용 또는 명부 작성과 관리 부적정	미흡	1
	⑬ 문턱 제거	•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장소에 문턱 제거 확인 ① 입원실 ② 복도 ③ 목욕실 ④ 화장실 • 문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목욕실 및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된 경우 인정	필수	모든 장소에 문턱 제거	우수	5
				3개 장소에만 문턱 제거	보통	3
				2개 이하에만 문턱 제거	미흡	1

구분	영역	판단기준	지표 유형	결 과	척도	배점	
4. 환자 편의 시설 설치 (5개 항목)	⑭ 호출벨 설치 및 적용	• 병상, 목욕실, 화장실, 휴게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점검 당일 작동 여부 확인(동시 호출 확인) • 휴게실이 메인스테이션 바로 앞에 있을 경우에도 설치 필요	필수	모든 장소에 호출벨 설치 및 작동	우수	5	
				일부 장소에만 호출벨 설치 및 작동	보통	3	
				병상에만 호출벨 설치 및 작동	미흡	1	
	⑮ 안전손잡이 설치	• 복도 양쪽, 계단 벽면, 화장실, 목욕실, 휴게실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계단의 안전손잡이는 벽면에 설치가 되어야 함 • 휴게실에 의자가 있더라도 설치되어야 함	필수	모든 장소에 각각 설치	우수	5	
				계단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 설치	보통	3	
				복도, 화장실, 목욕실에만 설치	미흡	1	
	⑯ 안전사고 방지 물품구비	• 점검 당일 병동에서 확인 • 환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각 물품 구비한 경우 우수로 판단 ① 전동침대(50%이상구비) ② 욕창방지용품(최소5%, 환자 특성 고려 충분한 수량 확보) ③ 낙상감지센서 및 장치(병동 당 하나 이상 구비)	필수	전체 해당품목 구비	우수	5	
				전동침대와 욕창방지용품만 구비	보통	3	
				물품 중 하나만 구비	미흡	1	
	4. 환자 편의 시설 설치 (5개 항목)	① 병실 내 화장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실 내 설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동화장실일 경우 보완	선별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② 병동 내 목욕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목욕실의 의미는 샤워실 포함 • 만약 일반병동과 통합병동이 같은 층에 있을 경우,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보완 ※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인접한 곳이란 통합병동과 같은 층으로 판단함	선별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③ 목욕 보호구 구비		• 점검 당일 목욕실 당 목욕 침대 또는 목욕 의자가 1개 이상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 목욕실을 일반병동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구비되어도 보완으로 판단	선별	구비	우수	2	
				미구비	보완	1	
④ 휴게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통합병동이 1개 이상일 경우, 각 병동마다 설치된 경우 우수로 판단함	선별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⑤ 면담실 설치		• 점검 당일 확인 •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이 1개 이상일 경우, 각 병동마다 설치된 경우 우수로 판단 • 간호사 휴게실을 면담실로 공동 사용하는 경우 보완으로 판단	선별	설치	우수	2	
				미설치	보완	1	

구분	영역	판단기준	지표 유형	결과	척도	배점
5.제공 인력 관리	⑥ 정기적 교육 실시	• 점검 당일 제공인력 면담으로 교육 실시 여부 확인(3명 이상) •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재활지원 인력별 교육 내용 확인 • 점검 월 기준 직전 3개월 • 교육일지의 참석자 서명 확인 • 제공인력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인정	선별	각 제공인력별 교육 실시	우수	2
				일부 제공인력에 교육 실시	보완	1
	⑦ 계획적인 인사관리 운영	• 점검 연도 기준 • 점검 당일 제공기관이 제출한 아래의 항목 확인 ① 인사규정 ② 정기적인 인사계획 수립 ③ 인사계획에 따른 직원 배치 유무	선별	3개 항목 모두 준수	우수	2
				3개 항목 일부 미준수	보완	1
	⑧ 신규직원 교육	• 점검 연도 기준 • 점검 당일 제공기관이 제출한 신규 제공인력 교육 운영 내용 확인 ① 전년도 교육 요구도 파악 * 교육 후 만족도 조사 또는 교육 희망 등을 파악하는 경우를 말함 ② 연간 교육 계획 수립 ③ 교육 계획에 따라 신규직원 교육 실시 • 교육 전담 담당자(팀·부서)가 별도의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실시하고 있는 경우 ①②③항목과 관계없이 우수로 인정 - 교육 전담 담당자 별도 지정 여부 Y ☐ / N ☐ - 교육 전담 간호사 지정 여부 Y ☐ / N ☐	선별	3개 항목 모두 준수	우수	2
				일부 항목 미준수	보완	1
6.민원처리	⑨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	• 기관이 제출한 환자의 불만 및 고충관리 지침과 환자와 직원이 절차를 알고 있는지 면담을 통해 확인 • 불만 및 고충 사항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 점검 당일 환자 및 제공인력 면담(최소 5명 이상), 규정 등 지침으로 확인	선별	준수	우수	2
				미준수	보완	1
7.자율점검	⑩ 주기적 자율점검 실시여부	•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지 확인 • 병동 책임자 면담과 자료 확인을 통해 분기별 자율점검 실시한 경우 우수로 판단	선별	주기적으로 점검	우수	2
				내역 없음	보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 별	
소 재 지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① 연번	② 주민등록번호	③ 고용형태	④ 직종	⑤ 성명	⑥ 면허 (자격종류)	⑦ 면허 (자격번호)	⑧ 면허취득일자	⑨ 입사일자	⑩ 퇴사일자	⑪ 근무형태	휴가			병동			⑬ 간호·병서·서비스·동원료·적용인원	⑭출산대체자			
											⑫ 구분	⑬ 적용일자 (from)	⑭ 적용일자 (to)	⑮ 병동코드	⑯ 근무시작일자 (from)	⑰ 근무종료일자 (to)		출산휴가자		대체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일자 (from)	적용일자 (to)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인력 일반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1. 야간전담 간호사 : 해당 간호사의 근로계약서 등 야간 전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2. 병동지원인력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무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제공인력 현황 작성요령】

① 연번

②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및 뒷자리 수 7자리수를 기재(0000000-00000000)

③ 고용형태(코드번호 기재로 기재) : 1. 정규직(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2. 계약직

④ 직종(코드번호로 기재)

01. 수간호사, 02. 간호사, 03. 간호조무사, 04. 병동지원인력 05. 재활지원인력

⑤ 성명 :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기재(예 : 홍길동)

⑥ 01. 간호사, 02. 간호조무사, 03. 물리치료사, 04. 작업치료사, 05. 사회복지사, 06. 요양보호사, 07. 기타(2개 이상 면허(자격)를 소지한 경우에는 선순위 코드번호 기재), 08. 없음

⑦ 면허(자격)번호 : 띄어쓰기 없이 기재

⑧ 면허취득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061231)

⑨ 입사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⑩ 퇴사일자 :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⑪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01. 정규직 전일제 : 정규직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

02. 계약직 전일제(40시간) : 계약직으로서 주당 평균 40시간 이상 근무

03. 단시간 시간제(32~40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4. 단시간 시간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5. 단시간 시간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06. 야간전담제(32시간 이상)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32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

07. 야간전담제(24~32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근무

08. 야간전담제(16~24시간)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야간만 전담하여 주당 평균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근무

⑫ 휴가구분(30일 이상 휴가자를 코드번호로 기재) :

01. 출산, 02. 육아, 03. 연수, 04. 파견, 05. 병가, 06. 기타(일반휴직 등)

⑬ 적용일자(from) : “휴가시작일” 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⑭ 적용일자(to) : “휴가종료일” 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41231)

⑮ 병동코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 신고서상의 ②병동코드를 기재

⑯ 근무시작일자(from) : 해당 병동 근무시작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20160101)

⑰ 근무종료일자(to) : 해당 병동 근무종료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예 : 99991231)

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인원

- ⑪근무형태 해당코드의 인원 수 기재

·(01, 02) 1인, (03, 06, 07) 0.8인, (04, 08) 0.6인, (05, 09) 0.4인

- ⑫ 휴가 구분자는 “0”으로 기재

⑲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 신고 : 간호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②번부터 ⑱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⑲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 ☐ 최초 ☐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요양기관종별	

운영현황	환자 수	명
	병동지원인력 수	명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명

○ 병동지원인력 운영형태

☐ 원내 직접고용 ()명 ☐ 위탁 운영 ()명

○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구분	2교대	3교대	상근	기타
인원수 (명)				
근무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무내용

—
—
—

○ 교육계획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원인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구비서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근무표 - 병동지원인력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고용관계 및 원내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평가대상기간 동안 병동지원 인력 대비 일 평균 환자 수가 변경된 경우 평가대상기간 동안 마지막 월의 다음 분기부터 해당 가산수가를 산정

[별지 제20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 계획서 ☐ 최초 ☐ 변경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운영형태	☐ 월별 10% 이상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 수					명
		야간전담 간호사 수					명
		야간전담 간호사 비율					%
	☐ 병동당 2명 이상 (병동별 야간전담 간호사수)	C001병동	명	C002병동	명	C003병동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적용(변경) 시작일자	년 월 일						
근무 형태	☐ 15일 근무, 15일 비번 ☐ 기타 (일 근무, 일 비번)						
주당 평균 근무 시간	근무시간대 근무인원수						
	☐ 32시간 이상		(__:__ ~ __:__)			__명	
	☐ 24시간 이상 32시간 미만		(__:__ ~ __:__)			__명	
	☐ 16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__:__ ~ __:__)			__명	
근무 중 휴게시간 여부	☐ __시간 (: ~ :)						
	☐ 시간 미지정						
급여 수준 및 특별수당 여부							
기타 특이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야간전담 간호사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작성자 성명			전화번호				
구비서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근무표 • 야간(20시~익일 8시)근무전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						

※ 운영계획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별첨 2)을 참고하여 작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요양기관 기호		요양기관명		종별		① 병동코드	
작성자 성명		작성자 부서		작성자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연번	② 작성인 자	③ 환자정보						④ 측정항목_간호활동													⑤ 측정항목_ ADL				⑥ 추가 정보					
																					척추		신체기능		심리		사회			
		환자 이름	가정 간호부	인턴 의사	생년 월일	성 별	상 영	간호 수	지속적 심전도 모니터링	호흡 간호	기관내 흡입간호	인공호흡기 사용	비침습적 산소투여	정맥내 투약	배액관 보유	위험행위 관리	수혈	전문 치료	항혈전제(정맥내투여)	면역억제제(주사제·경구제)	항부정맥제(주사제)	승압제(주사제)	항암치료제(경구제)	항암치료제(주사제)	마약제(주사제)	체위 변경	침상밖으로 이동	식사 섭취	배변 배뇨	낙상 발생장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 작성요령】

① 병동코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병상 운영현황(별제 제3호 서식)”의 ②병동코드를 기재(예: C001)

② 작성일자: 환자 평가일을 YYYYMMDD 형식으로 기재(예: 20190701)

③ 환자정보

- 환자등록번호: 병원에서 관리하는 환자등록번호 기재
- 가입자 구분(코드번호로 기재):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산재보험, 4: 자동차보험, 5: 기타
- 입퇴원 여부(코드번호로 기재): 1: 재원, 2: 입원(전입), 3: 퇴원(전출), 4: 당일입퇴원
- 생년월일: YYYYMMDD 형식으로 기재(예 : 20150101)
- 성별(코드번호로 기재): 1: 남성, 2: 여성
- 상병코드: 주진단명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기호를 1개만 기재(예: C16.10)
※ 삼단분류까지 필수 기재(오단분류까지 기재 가능)
- 당일수술여부(코드번호로 기재): 1: 수술 실시(수술 당일만), 2: 수술 미실시
※ 수술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9장, 제10장, 제18장의 항목 중 수술에 해당하는 분류항목

[측정항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세부설명(별첨1)”을 반드시 참고하여 평가

④ 간호활동(코드번호로 기재): 0: 적용기준 해당없음, 1: 적용기준 해당함

- 지속적심전도모니터링: 지속적으로 심전도를 모니터링하고, 심전도 평가 기록이 있는 경우
- 기관 내 흡인간호: T-cannula, E-tube 등 기관 내 삽관을 통한 흡인간호를 실시한 경우
- 인공호흡기 사용: 인공호흡기 사용, NPPV 또는 가온 가슴 고유량 비강캐놀라 요법을 실시한 경우
- 비침습적산소투여: 비침습적 산소투여(비강캐놀라, 산소마스크 등)를 시행한 경우
- 정맥 내 투약: 정맥 내를 통해 투여하는 약품별 투여횟수의 합이 6회 이상/1일인 경우
- 배액관 보유: 2개 이상 배액관을 보유 또는 흉관, 뇌실배액관, 지속적요추주막하배액관 1개 이상 보유
- 위험행동 관리: 치매, 섬망 등으로 위험행동 발생가능성이 높아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 수혈: 수혈을 실시한 경우
- 마약제(주사제):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마약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항암치료제(주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항암치료제(경구제): 악성 종양 세포의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제(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 승압제(주사제): 쇼크, 저혈압, 순환허탈환자의 혈압을 상승시키기 위해 승압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항부정맥제(주사제): 부정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항부정맥제(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 면역억제제(주사제, 경구제): 거부반응방지를 위해 면역억제제(주사제, 경구제)를 투여한 경우
- 항혈전제(정맥내투약): 혈전·색전증 발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항혈전제를 정맥 내 투여한 경우

⑤ 일상생활수행능력(코드번호로 기재): 0: 도움없음, 1: 일부도움, 2: 전부도움

- 체위변경: 스스로 양와위에서 측와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평가
- 침상 밖으로 이동: 스스로 침상 내에서 침상 밖으로 이동이 가능한지 평가
- 식사섭취: 스스로 식사 섭취가 가능한지 평가
- 배변·배뇨: 스스로 배변·배뇨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평가

⑥ 추가정보

- 낙상 발생장소(코드번호로 기재): 낙상이 발생한 당일 장소를 기재
0: 발생하지 않음, 1: 1인실 병실 내, 2: 2인실 병실 내, 3: 3인실 병실 내, 4: 4인실 이상 병실 내,
5: 화장실 및 샤워실, 6: 복도, 7: 검사실 및 치료실, 8: 기타(병원 로비 등)
- 욕창 단계(코드번호로 기재) : 욕창 단계를 기재(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단계)
0: 발생하지 않음, 1: stage 1, 2: stage2, 3: stage3, 4: stage4, 5: 단계측정불가, 6: 예상되어지는 심부조직 손상단계

[별지 제30호 서식] (앞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종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점검일자	년	월	일	
점검자	직책		연락처	
	성명		팩스 번호	

지표 유형	구분	영역	척도		
			우수(5)	보통(3)	미흡(1)
필수 지표	제공기관 병동 운영 사항 준수	① 제공인력 지정 배치기준 준수 운영			
		② 팀 간호 체계 제공			
		③ 병동운영지침마련 및 적용			
		④ 인력배치수준 게시			
		⑤ 정기신고 준수			
		⑥ 제공인력 현황 변경 신고 준수			
		⑦ 제공인력 처우 개선 지원			
	환자 안전 보장	⑧ 입원생활 안내			
		⑨ 환자 안전 예방 활동			
		⑩ 안전사고 보고 체계 준수			
		⑪ 보호자 상주 관리			
		⑫ 병문안객 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⑬ 문턱 제거			
		⑭ 호출벨 설치 및 작동			
		⑮ 안전손잡이 설치			
		⑯ 안전사고 방지 물품구비			
		영역	우수(2)	보완(1)	
선별 지표	환자 편의 시설 설치	① 병실 내 화장실 설치			
		② 병동 내 목욕실 설치			
		③ 목욕 보조기구 구비			
		④ 휴게실 설치			
		⑤ 면담실 설치			
	제공인력 관리	⑥ 정기적 교육 실시			
		⑦ 계획적인 인사관리 운영			
		⑧ 신규직원 교육			
	민원 처리	⑨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			
	자율점검	⑩ 주기적 자율점검 실시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자율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점검 지표와 점검 기준】

□ 지표 유형

- 필수지표 : 환자 안전 보장, 의료법, 사업지침 준수 사항(우수·보통·미흡으로 판단)
- 선별지표 : 환자 편의시설 설치 등 사업 지침 권고 사항(우수·보완으로 판단)

□ 점검 기준 ※ 점검 항목별 세부 기준은 [별첨6] 확인

• 필수지표

- ①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 운영 : 월별 제공인력 지정 배치 수준 준수 여부
- ② 팀 간호체계 제공 : 팀 간호 운영 여부
- ③ 병동운영지침 마련 및 적용 : 병동운영지침 적정 구비 여부
- ④ 인력배치수준 게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게시 여부
- ⑤ 정기신고 준수 : 정기신고 항목 기한 준수 여부
- ⑥ 제공인력 현황 변경신고 준수 : 변경신고 항목 기한 준수 여부
- ⑦ 제공인력 처우개선 지원 : 제공인력 대상 정기적 특별 수당 지급 여부
- ⑧ 입원생활 안내 : 본인 부담금 안내, 보호자 상주 제한 등 입원 환자 대상 입원생활 안내
- ⑨ 환자안전 예방 활동 : 낙상 방지, 욕창 예방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수행 여부
- ⑩ 안전사고 보고체계 준수 : 안전사고 보고체계 마련 및 준수 여부
- ⑪ 보호자 상주 관리 : 보호자 상주 적정 관리 여부
- ⑫ 병문안객 관리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기준 권고(2015. 11. 27.) 적용 여부
- ⑬ 문턱 제거 : 입원실, 복도, 목욕실, 화장실에 문턱 제거 여부
- ⑭ 호출벨 설치 및 작동 : 병상, 목욕실, 화장실, 휴게실에 호출벨 설치 및 작동 여부
- ⑮ 안전손잡이 설치 :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휴게실에 안전손잡이 설치 여부
- ⑯ 안전사고 방지 물품 구비 : 전동침대, 낙상감지센서 및 장치, 욕창방지용품 구비 여부

• 선별지표

- ① 병실 내 화장실 설치 : 병실 내 화장실 설치 여부
- ② 병동 내 목욕실 설치 : 병동 내 목욕실 설치 여부
- ③ 목욕 보조기구 구비 : 목욕실에 구비 여부
- ④ 휴게실 설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휴게실 설치 여부
- ⑤ 면담실 설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면담실 설치 여부
- ⑥ 정기적 교육실시 :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교육 실시 여부
- ⑦ 계획적인 인사관리 운영 : 인사규정, 정기적인 인사계획 수립, 인사계획에 따른 배치 유무
- ⑧ 신규직원 교육 : 교육 요구도 파악,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등 실시 여부
- ⑨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 : 관련 지침 준수 여부
- ⑩ 주기적인 자율점검 실시 : 주기적 자율점검 실시 여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자율점검표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율점검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함
- 자율점검의 결과 입력은 병동 단위가 전체 통합병동 결과 값을 입력

* 병동 운영 수준의 상향 표준화를 위하여 최소 분기 단위 점검 권장